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2024. 2. 20(화)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4년도 제1회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6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36,796,866	735,718,162	734,975,982	742,180	1,078,704	
일 반 회 계		711,333,570	710,254,866	709,512,686	742,180	1,078,704	
특 별 회 계		25,463,296	25,463,296	25,463,296	0	0	
	의료급여기금	585,000	585,000	585,000			
	주 차 장	24,878,296	24,878,296	24,878,296			

## 나. 일반회계

###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B)	기정액			1회추경(안) (B)	비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11,333	710,255	709,513	742	1,078	
자체재원	156,243	156,243	156,243	-	0	
지방세	114,629	114,629	114,629	-	-	
세외수입	41,614	41,614	41,614	-	-	
의존재원	476,875	475,797	475,055	742	1,078	
지방교부세	14,994	14,994	14,994	-	-	
조정교부금등	132,875	132,875	132,875	-	-	
보조금	329,006	327,928	327,186	742	1,078	국비 153 시비 925
보전수입등	78,215	78,215	78,215	0	0	
순세계잉여금	78,215	78,215	78,215	-	-	

### -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A+B)	기정액			1회추경(안) (B)	비고
		소계(A)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11,333	710,255	709,513	742	1,078	
정책사업	581,942	580,898	580,156	742	1,044	
재무활동	1,688	1,654	1,654		34	기금 전출금
행정운영경비	127,703	127,703	127,703			

## 4. 부서별 총괄현황

###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b>총계</b>	<b>736,796,866</b>	<b>100.00 %</b>	<b>735,718,162</b>	<b>100.00 %</b>	<b>1,078,704</b>	<b>0.15 %</b>
민원감사담당관	246,204	0.03 %	246,204	0.03 %	0	0.00 %
소통담당관	3,302,921	0.45 %	3,302,921	0.45 %	0	0.00 %
<b>행정안전국</b>	<b>156,497,646</b>	<b>21.24 %</b>	<b>155,083,692</b>	<b>21.08 %</b>	<b>1,413,954</b>	<b>0.91 %</b>
행정지원과	119,765,377	16.25 %	119,765,377	16.28 %	0	0.00 %
자치행정과	12,150,176	1.65 %	11,187,483	1.52 %	962,693	8.61 %
교육지원과	20,561,696	2.79 %	20,110,435	2.73 %	451,261	2.24 %
주민안전과	3,190,726	0.43 %	3,190,726	0.43 %	0	0.00 %
민원여권과	829,671	0.11 %	829,671	0.11 %	0	0.00 %
<b>기획경제국</b>	<b>33,400,019</b>	<b>4.53 %</b>	<b>37,150,745</b>	<b>5.05 %</b>	<b>△3,750,726</b>	<b>△10.10 %</b>
기획예산과	17,035,178	2.31 %	20,961,104	2.85 %	△3,925,926	△18.73 %
지역경제과	8,152,456	1.11 %	7,977,256	1.08 %	175,200	2.20 %
일자리청년과	6,628,085	0.90 %	6,628,085	0.90 %	0	0.00 %
재무과	504,790	0.07 %	504,790	0.07 %	0	0.00 %
세무1과	452,608	0.06 %	452,608	0.06 %	0	0.00 %
세무2과	626,902	0.09 %	626,902	0.09 %	0	0.00 %
<b>복지가족국</b>	<b>382,553,160</b>	<b>51.92 %</b>	<b>380,617,774</b>	<b>51.73 %</b>	<b>1,935,386</b>	<b>0.51 %</b>
복지정책과	12,140,356	1.65 %	12,140,356	1.65 %	0	0.00 %
복지지원과	95,517,103	12.96 %	95,517,103	12.98 %	0	0.00 %
어르신장애인과	173,587,472	23.56 %	172,341,472	23.42 %	1,246,000	0.72 %
가족정책과	84,327,445	11.45 %	83,638,059	11.37 %	689,386	0.82 %
아동청소년과	16,980,784	2.30 %	16,980,784	2.31 %	0	0.00 %
<b>푸른미래도시국</b>	<b>21,228,486</b>	<b>2.88 %</b>	<b>20,576,386</b>	<b>2.80 %</b>	<b>652,100</b>	<b>3.17 %</b>
주택과	1,514,842	0.21 %	1,514,842	0.21 %	0	0.00 %
도시계획과	292,565	0.04 %	292,565	0.04 %	0	0.00 %
주거정비과	2,374,109	0.32 %	1,722,009	0.23 %	652,100	37.87 %
공원녹지과	16,575,290	2.25 %	16,575,290	2.25 %	0	0.00 %
건축과	471,680	0.06 %	471,680	0.06 %	0	0.00 %
<b>문화환경국</b>	<b>74,226,487</b>	<b>10.07 %</b>	<b>74,010,785</b>	<b>10.06 %</b>	<b>215,702</b>	<b>0.29 %</b>
문화체육과	26,453,542	3.59 %	26,237,840	3.57 %	215,702	0.82 %
청소행정과	45,057,363	6.12 %	45,057,363	6.12 %	0	0.00 %
환경과	2,264,144	0.31 %	2,264,144	0.31 %	0	0.00 %
부동산정보과	451,438	0.06 %	451,438	0.06 %	0	0.00 %
<b>교통건설국</b>	<b>42,067,999</b>	<b>5.71 %</b>	<b>41,557,999</b>	<b>5.65 %</b>	<b>510,000</b>	<b>1.23 %</b>
교통행정과	1,901,906	0.26 %	1,901,906	0.26 %	0	0.00 %
주차관리과	24,878,296	3.38 %	24,878,296	3.38 %	0	0.00 %
건설행정과	279,165	0.04 %	279,165	0.04 %	0	0.00 %
도로과	8,004,325	1.09 %	8,004,325	1.09 %	0	0.00 %
치수과	7,004,307	0.95 %	6,494,307	0.88 %	510,000	7.85 %
<b>보건소</b>	<b>18,809,844</b>	<b>2.55 %</b>	<b>18,707,556</b>	<b>2.54 %</b>	<b>102,288</b>	<b>0.55 %</b>
보건정책과	2,956,150	0.40 %	2,956,150	0.40 %	0	0.00 %
건강증진과	12,523,279	1.70 %	12,420,991	1.69 %	102,288	0.82 %
의약과	2,545,728	0.35 %	2,545,728	0.35 %	0	0.00 %
위생과	784,687	0.11 %	784,687	0.11 %	0	0.00 %
<b>의회사무국</b>	<b>4,464,100</b>	<b>0.61 %</b>	<b>4,464,100</b>	<b>0.61 %</b>	<b>0</b>	<b>0.00 %</b>

## 나. 행정안전국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액	기정액	1차 추경(안)
1	자치행정과	생활안전 CCTV설치	- 지능형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교체	1,002,500	202,500	800,000
2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	- 박미사랑 마을회관 내 헬스장 관리요원 채용 (1명)	285,363	259,787	25,576
3		고향사랑기금 전출	- 2023년 모금되어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	49,242	15,000	34,242
4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참여자 일반 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292,820	189,945	102,875
5	교육지원과	(가칭) 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조성	- 위치 : 범안로1242(독산2동 1035) - 건립방식의 변경 (리모델링→신축)으로 철거비 및 설계비 편성	810,341	359,080	451,261

## 5.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6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총 14억 1,395만 4천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편성 내역은

- (자치행정과) 2024. 1. 8 생활안전 CCTV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본예산에 기편성된 구비 2억원에 대한 시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비 3억원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3억원을 추가하여 총 8억원을 증액

작년 3월 박미사랑 마을회관 헬스장 내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및 CCTV 등 안전장비 보강과는 별도로 각종

사고시 현장대처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헬스장 전담 관리  
요원을 채용하고자 9개월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57만  
6천원을 증액

2023년 모금되어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을  
고향사랑기금으로 3,424만 2천원 증액 전출

2024. 1. 19 사회적기업 인건비 고용노동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보조금 확보를 위해 1억 287만 5천원 증액

- (교육지원과) (가칭)금천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 방식이 리모델  
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철거비 신규 편성 및 설계비  
증액으로 4억 5,126만 1천원 증액

○ 행정안전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 확정 통보에  
따른 매칭비 반영, 헬스장 안전요원 채용, 국제 외국어센터 건립  
방식 변경 등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이  
요구된 것으로 생각됨.

○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관계 법령 1부. 끝.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34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